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64회 임시회 (2023. 10. 17.)

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하나

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110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9월 26일(화)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6일(금)

2. 제출사유

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을 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의 내용

- 1) 위탁운영 시설현황
 - 성미산체육관

위 치		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-11		
층별 현황	2층	287.20㎡	다목적체육실(1), 다용도실(1), 기계실	
	1층	1,436.32㎡	종합체육관(배드민턴 8면, 무대 1개), 사무실, 탈의실, 샤워장, 화장실 스포츠용품점(임대)	
운영인력	구분	총계	운영	
	현원	7	행정관리 2	안내 3 미화 2

○ **염리생활체육관**

위 치		마포구 큰우물로 61				
층별 현황	4층	1,811㎡	관람석(201석)			
	3층		종합체육관(배드민턴 7면, 농구 1코트, 배구 1코트), 다목적체육실(1), 탈의실, 샤워장, 화장실, 라커룸, 안내데스크/사무실(1) 등			
운영인력		구분	총계	운영		
				행정관리	안내	미화
		현원	7	2	3	2

2) 위탁기간: 3년 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3) 위탁사무 범위

○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4) 소요예산: 1,235백만원(구비, 2023년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소요예산 (합계)	인력운영비	프로그램 운영지원	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	기본경비
성미산 체육관	569	333	160	9	67
염리생활 체육관	666	332	235	10	89

5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공개모집

나. 추진 일정

- 1) 2023. 9. : 성과평가 실시
- 2) 2023. 10. ~ 11. : 재위탁 심사 및 선정 결정
- 3) 2023. 12. : 협약 체결
- 4) 2024. 1. : 위탁사무 시작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('23.12.31.)인 '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'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년간 **재위탁**('24.1.1. ~ '26.12.31.)을 추진하고자(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」)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《 재위탁 / 재계약 정의 》

- **재위탁**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**새로운** 수탁기관을 **선정**하여 위탁하는 것(조례 §2③)
 - ※ 재위탁 사유 예시
 - 위탁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
 - 위탁기간 만료 전 기존 수탁기관의 포기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
 - 기존 위탁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함께 공동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
- **재계약**: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**기존** 수탁기관과 **다시** 계약하는 것(조례 §2④)
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관 시설의 운영·관리 업무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2)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. **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**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2)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어,
- 체육관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·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- 마포구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성미산체육관은 2014년부터, 염리생활체육관은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였음.
- ‘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’은 시설형 민간위탁³⁾ 유형으로, 현재 마포스포츠클럽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임.

〈 그 간 공공체육관 민간위탁 추진 연혁 〉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명	수탁내용
성미산 체육관	14. 9. 1. ~ 16. 8. 31.	마포구생활체육회	성미산체육관 운영
	16. 9. 1. ~ 18. 8. 31.	마포구체육회	
	18. 9. 1. ~ 20. 12. 31.	마포스포츠클럽	
	21. 1. 1. ~ 23. 12. 31.		
염리생활 체육관	15. 1. 1. ~ 16. 8. 31.	마포구생활체육회	염리생활체육관 운영
	16. 9. 1. ~ 18. 8. 31.	마포구체육회	
	18. 9. 1. ~ 20. 12. 31.	마포스포츠클럽	
	21. 1. 1. ~ 23. 12. 31.		

3) 시설형 민간위탁(예산지원형) : 마포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.

-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 운영 제한으로 회원 등록률이 저조하였으나, 2022년부터는 이용자 수와 수지율이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관을 연중무휴 개방하여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.

〈 성미산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실적 〉

구 분	회원 등록률(%)	수지율(%)	이용인원(명)		
			합계	월회원	일일회원
2021년	14.1	45	42,816	684	42,132
2022년	62.4	67.5	40,764	4,996	35,768
2023년(9월)	84.6	67.7	29,777	4,579	25,198

〈 염리생활체육관 민간위탁 운영실적 〉

구 분	회원 등록률(%)	수지율(%)	이용인원(명)		
			합계	월회원	일일회원
2021년	19.1	28.8	15,752	1,506	14,246
2022년	54.8	59.1	13,706	7,079	6,627
2023년(9월)	76.4	62.4	10,670	7,048	3,622

- ‘공공체육관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’를 살펴보면, 수탁기관인 마포스포츠클럽은 시설운영, 시설관리, 지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성미산체육관은 82.5점, 염리생활체육관은 82점을 득점하였음.

〈 등급 판정 기준 〉

등급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점수	90점 이상	80~89	70~79	60~69	60점 미만

- 그러나, 동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서 제기된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재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좀 더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‘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’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체육관의 관리·운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 및 규정과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음.
- 또한, 본 동의안의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바,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수탁자 선정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문성, 도덕성 등을 겸비한 법인·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,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 등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이와 더불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·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붙임 1

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(구의회 동의)

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
↓	↓		
② 구 의 회 동 의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구의회 동의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▶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▶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 		
↓	↓		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 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성과평가 결과 심의 ▶ 시정요구 결과 반영 ▶ 재계약 적정성 심의
↓	↓		
④ 수탁기관 선정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	-	
↓	↓		
⑤ 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
↓	↓		
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
↓	↓		
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▶ 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▶ 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 		

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4조(체육시설 관리·운영)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을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5.4.16>

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4.16>

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

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, 2023.3.9.>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-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명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5. 민간위탁기간
6. 수탁자 선정방식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9.>

1. 인적·물적 현황
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
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 5. 사건·사고 현황
 6. 성과평가결과서
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2. 위탁기간
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